



# 심사보고서

|      |                                    |
|------|------------------------------------|
| 의안명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br>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의안번호 | 제8호                                |
| 심사일자 | 2026. 8. 28.                       |



위원장 전 정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8 |
|------|---|

2026년 8월 28일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14. 송파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6. 8. 18.
- 다. 상정일자: 2026. 8. 28. 제33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 2) 출연내용

- 송파문화재단의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송파의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

#### 3)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 69,211천원 [붙임2]

#### 4) 출연금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 5) 출연의 필요성

-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 송파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인건비, 운영비)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함

#### 다.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 및 제21조(재정지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손지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출연 동의안은 송파문화재단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지난 2026년 5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출연하려는 내용임.
- 본 출연 동의안의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지난 2025년 11월 개관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내실화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6년 5월부터 3년간 송파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려는 내용임.  
본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6,921만 1천원으로, 출연금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인건비 66,171천원, 기본경비 3,040천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팀 신설 및 새로 채용하는 4명에 대한 필요경비임.
-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내 구립도서관 11개소, 여성문화회관 및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로부터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 신규 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채용 추진경위 관련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김서운 위원**

- 이번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세부내역 중 문화사업팀 1명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요구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사업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 및 기타 문화사업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질의】 이원우 위원**

- 송파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문화공연팀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연팀이 아닌 시설지원팀으로 해야 되지 않은지?
- 공연은 실질적으로 평일 저녁시간, 주말, 공휴일 등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 향후 문화예술회관의 자체 공연을 구민에게 많이 선보일 예정인데, 조명, 음향감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 지원 보다는 수준높은 공연을 위하여 문화공연팀을 신설하고자 함.
-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연이 있어 일을 하게 되면 평일 휴무 등 방안을 마련하겠음.

**【질의】 박지효 위원**

- 채용 절차가 출연 동의안보다 먼저 추진된 사유는?
- 출연금이 삭감되는 경우,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 2025년 11월 14일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였고,

2026년 4월 13일 송파문화예술회관 공공위탁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렸음.  
채용 절차 추진 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늦게 인지  
하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출연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어려운 실정임.

**【질의】 조용근 위원**

- 송파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요청한 일자 및  
송파문화재단의 채용 공고일은 언제인지?
-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하여 오픈한 후, 공연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답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 재단 측에서 부서로 7월 8일 제출하고, 7월 10일에 승인하였음.  
채용공고문은 7월 13일에 공고난 것을 확인하였음.
-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설 관리 인력은 상주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구민회관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해왔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